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퀀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(변경전: 키움 퀀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)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8. 06. 22.
3. 주요 변경 사항 :
 - 투자신탁 명칭 변경
 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
[규약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키움 퀀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” 이라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키움퀀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”이라 한다.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 (생략) 나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,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다. ~라. (생략) 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	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,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다. ~라. (현행과 동일) 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분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7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분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

	<p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</p>	<p>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</p>
--	--	---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신탁 명칭	<p><u>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</u></p>	<p><u>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</u></p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<p>제 2 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2) 투자 제한</p>	<p>*투자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,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다. ~라. (생략)</p> <p>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</p>	<p>*투자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합니다)</u>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,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다. ~라. (현행과 동일)</p> <p>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<u>다만,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</u>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</p>
<p>제 2 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2) 투자 제한</p>	<p>*투자비율 제한의 예외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6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</p>	<p>*투자비율 제한의 예외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7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</p>

	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	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	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)운용자산규모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)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신탁 명칭	키움 퀴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증권 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	키움퀴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 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(1) 투자전략 4. 운용전문인력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(1) 투자전략 5. 투자실적 추이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